



채권양수도 계약서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이하 '파산자'라 함)의 파산관재인 조인명(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골드만코리아(주)(대표자 사내이사 박찬순, 이하 '양수인'이라 함)는 파산자 소유의 자산(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

- 다음 -

제1조 【양도대상 자산】

양도대상 자산(이하 '본건 양도자산'이라 함)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채무자	채권의종류	채권금액(원)	비고
1	(주)제이에스바이오	매출채권	3,541,600	하자등을 이유로 지급거부 관련 증빙없음.
2	스타특허기술	매출채권	1,193,500	하자등을 이유로 지급거부 관련 증빙없음.
합 계			4,735,100	

제2조 【양수도대금】

① 본건 양도자산의 양수도대금은 금 이십육만원(₩260,000)(이하 '본건 양수도대금'이라 함)으로 한다.

제3조 【대금 지급방법】

① '양수인'은 제7조에 따른 본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건 양수도대금 이십육만원(₩260,000)을 아래 계좌로 이체한다.



- ① ‘양수인’이 본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건 양수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양수인’이 본건 양수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본건 계약은 해제될 수 없다.

제7조 【효력】

본건 계약은 서울회생법원 제12부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기타】

본건 계약의 분쟁에 관한 제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각 조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채권양수도계약에 기재된 날짜에 직접 체결하거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건 채권양수도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이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5. .

양도인 (갑)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조인명 (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5층(서초동, 상림빌딩)

양수인 (을) 골드만코리아(주) 사내이사 박 찬 순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48-18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
- 계좌번호 : 082-125766-04-018
- 예금주 :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조인명

제4조 【‘양수인’의 진술보장 및 확약사항】

- ① ‘양수인’은 본건 계약체결일 현재 본건 양도자산의 권리(제한)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여 그 현상대로 양수한다.
- ② ‘양수인’은 본건 양도자산 및 이와 결부된 어떠한 하자, 부존재 등 흠결사항을 이유로 이의제기, 본건 양수도대금의 감액 요구 및 본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양수인’은 본건 계약체결일 이후 본건 양도자산 및 이와 결부된 어떠한 의사 표시의 하자 등을 이유로 본건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권리이전 및 채권양도통지】

- ① ‘양도인’은 본건 양수도대금을 수령한 후 ‘양수인’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권리이전 및 채권양도통지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교부하고, 기타 이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다.
- ② ‘양수인’은 본조 제1항의 서류 및 자료를 교부 받은 후 ‘양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권리이전 및 채권양도통지를 완료하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 ③ 파산자에 대한 파산폐지일(또는 파산종결일)의 30일 전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본건 양도자산의 권리이전 및 채권양도통지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해 제】

파산관재인이 업무수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매각대상 자산에 대한 문의처 : 채무자 (주)제이에스정밀의 파산재단 담당자

TEL 02-508-0479, FAX 070-7433-045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 <https://www.onbid.co.kr>, 콜센터 1588-5321

2026년 4월 일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조인명



주심판사	재판장

법원용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조인명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3층(여의도동, 아이비피아빌딩)
전화 02-508-0479 / 팩스 070-7433-0454

문서번호 : 제이에스정밀 파산 제 2026 - 5호

발송일자 : 2026. 5. 29.

받 음 :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주심판사 : 신 아 름 판사님

제 목 : 자산(채권) 수의매각 허가신청

I. 귀 원 2025하합579호 파산선고 사건입니다.

II.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매출채권 환가를 위하여 귀원으로 부터 2026. 4. 24.자 채권 매각 및 포기공고 게재 허가결정(문서번호 2026-3호)을 얻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유찰조건부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인 2026. 5. 11.까지 입찰에 응한 입찰참여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해당 자산에 대하여 환가포기를 하려 하였으나 입찰 마감일 이후 골드만코리아(주)가 매수의향서를 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본건 매각대상 자산을 수의매각(채권양수도 방식)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본입니다.

2026. 6. 1.

서울회생법원

법원사무관 이문렬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조인명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3층(여의도동, 아이비피아빌딩)
전화 02-508-0479 / 팩스 070-7433-0454

발송일자 : 2026. 4. 6.

수 신 : (주)제이에스바이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436-39(오선동)

참 고 : 대표자 이정석

제 목 : 매출채권에 대한 지급 청구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회생법원은 2025. 7. 8. 11:00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이하 '파산 채무자' 라 합니다)에게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조인명을 선임하였는바(서울회생법원 2025하합579 파산선고), 파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처분권은 본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3. 본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금 3,541,600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매출채권 금 3,541,600원의 지급을 요청드리오니, 본 서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파산재단의 임치금 계좌 "기업은행 082-125766-04-018 예금주 (주)제이에스정밀 파산관재인 조인명" 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채권의 존재 또는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가 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의 또는 관련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본 파산관재인은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서신과 관련하여 협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발신인인 파산관재인 (담당자 : 조인명 변호사, 이메일 : imcho@gylaw.co.kr, admin2@gylaw.co.kr 연락처 : 02-508-04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 파산선고결정문
2. 임치금 계좌 사본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조인명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조인명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3층(여의도동, 아이비피아빌딩)

전화 02-508-0479 / 팩스 070-7433-0454

발송일자 : 2026. 4. 6.

수 신 : 이정석(상호명: 스타특허기술)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45, 109동 602호(구의동, 래미안파크스위트)

제 목 : 매출채권에 대한 지급 청구의 건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2025. 7. 8. 11:00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이하 '파산 채무자' 라 합니다)에게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조인명을 선임하였는바(서울회생법원 2025하합579 파산선고), 파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처분권은 본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 본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가 귀하에 대하여 금 1,193,500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매출채권 금 1,193,500원의 지급을 요청드리오니, 본 서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파산재단의 임치금 계좌 “기업은행 082-125766-04-018 예금주 (주)제이에스정밀 파산관재인 조인명”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채권의 존재 또는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의 또는 관련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본 파산관재인은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서신과 관련하여 협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발신인인 파산관재인 (담당자 : 조인명 변호사, 이메일 : imcho@gylaw.co.kr, admin2@gylaw.co.kr 연락처 : 02-508-04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 파산선고결정문
2. 임치금 계좌 사본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조인명





- 아 래 -

1. 본건 매각대상자산의 개요

가. 매각목적물

순번	채무자	채권의종류	채권금액(원)	비고
1	(주)제이에스바이오	매출채권	3,541,600	하자등을 이유로 지급거부 관련 증빙없음.
2	스타특허기술	매출채권	1,193,500	하자등을 이유로 지급거부 관련 증빙없음.
합 계			4,735,100	

나. 매각내용

- (1) 매각금액 : 260,000원
- (2) 매수자 : 골드만코리아(주)
- (3) 지급조건 : 법원허가 후 3일 이내 전액 납부

다. 기타사항

매수인이 당 파산재단에 대하여 위 매각목적물에 관한 어떠한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고 이전비용 등 이전과 관련한 제반 위험과 부담은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당 파산재단은 귀 원의 허가와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위 매각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위 자산(채권)에 관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예정입니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매수의향서 사본 1부
2. 채권양수도 계약서(안) 1부. 끝.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조인명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희망서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채무자 주식회사제이에스정밀의 파산재단 자산을 매입하고자 아래와 같이 매수희망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3 내역

채무자: (주)제이에스바이오 채권종류: 매출채권 채권금액: 3,541,600원

비고: 장기외상매출, 하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 증빙없음

채무자: 스타특허기술 채권종류: 매출채권 채권금액: 1,193,500원

비고: 장기외상매출, 하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 증빙없음

4. 매수희망 금액: 260,000원

위와 같이 매수하고자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6. 05. 15

매수희망자 : 골드만 코리아(주)

사내이사 박 찬 순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48-18

전 화 번 호: 070-7719-5105 010-6584-6689

이 메 일: kijoco@hanmail.net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도 계약서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이하 '파산자'라 함)의 파산관재인 조인명(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골드만코리아(주)(대표자 사내이사 박찬순, 이하 '양수인'이라 함)는 파산자 소유의 자산(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

- 다 음 -

제1조 【양도대상 자산】

양도대상 자산(이하 '본건 양도자산'이라 함)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채무자	채권의종류	채권금액(원)	비고
1	(주)제이에스바이오	매출채권	3,541,600	하자등을 이유로 지급거부 관련 증빙없음.
2	스타특허기술	매출채권	1,193,500	하자등을 이유로 지급거부 관련 증빙없음.
합 계			4,735,100	

제2조 【양수도대금】

- ① 본건 양도자산의 양수도대금은 금 이십육만원(₩260,000)(이하 '본건 양수도 대금'이라 함)으로 한다.

제3조 【대금 지급방법】

- ① '양수인'은 제7조에 따른 본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건 양수도대금 이십육만원(₩260,000)을 아래 계좌로 이체한다.



- 은행 :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
- 계좌번호 : 082-125766-04-018
- 예금주 :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조인명



제4조 【‘양수인’의 진술보장 및 확약사항】

- ① ‘양수인’은 본건 계약체결일 현재 본건 양도자산의 권리(제한)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여 그 현상대로 양수한다.
- ② ‘양수인’은 본건 양도자산 및 이와 결부된 어떠한 하자, 부존재 등 흠결사항을 이유로 이의제기, 본건 양수도대금의 감액 요구 및 본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양수인’은 본건 계약체결일 이후 본건 양도자산 및 이와 결부된 어떠한 의사 표시의 하자 등을 이유로 본건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권리이전 및 채권양도통지】

- ① ‘양도인’은 본건 양수도대금을 수령한 후 ‘양수인’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권리이전 및 채권양도통지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교부하고, 기타 이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다.
- ② ‘양수인’은 본조 제1항의 서류 및 자료를 교부 받은 후 ‘양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권리이전 및 채권양도통지를 완료하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 ③ 파산자에 대한 파산폐지일(또는 파산종결일)의 30일 전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본건 양도자산의 권리이전 및 채권양도통지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해 제】

- 

- ① ‘양수인’이 본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건 양수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양수인’이 본건 양수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본건 계약은 해제될 수 없다.

제7조 【효 력】

본건 계약은 서울회생법원 제12부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기 타】

본건 계약의 분쟁에 관한 제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각 조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채권양수도계약에 기재된 날짜에 직접 체결하거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건 채권양수도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이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5. .

양도인 (갑)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정밀의 파산관재인 조인명 (인)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4, 3층(여의도동, 아이비피아빌딩)

양수인 (을) 골드만코리아(주) 사내이사 박 찬 순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48-18